

【붙임4】 가산대상 자격 및 채용우대 지원자격

○ 채용우대사항

구 분		우대사항 (가산점 비율 등)	확인방법	비 고
취업지원대상자		전형단계별 만점의 5% 또는 10%	국가보훈처 발급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	-모든 자격은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이전 취득분에 한함. -매 과목 40% 이상 득점자에게 가산점 부여 -가산점 대상 자격이 2개 이상 중복되는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자격 하나만 가산점 부여함. -취업지원대상자가 가산점 대상 자격이 있는 경우 이를 합산함. -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 하는 사람은 채용직무별 선발예정 인원의 30%를 초과할 수 없음. (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3항)
다문화가족 (국적 취득자의 경우 TOPIK 5급 이상 취득자에 한함)		필기시험 만점의 5%	국적취득 사실 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(해당자) TOPIK성적표(해당자)	
북한이탈주민		필기시험 만점의 5%	북한이탈주민등록 확인서	
고급 자격증 소지자	변호사, 공인회계사, 법무사, 세무사, 공인노무사, 감정평가사	서류전형 면제 (입사지원 시 공인 영어성적 불필요), 필기시험 만점의 5%	자격증 사본	
	기술사, 건축사			
주거복지사 자격증 소지자		서류전형 만점의 3%	자격증 사본	
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		서류전형 만점의 2%(2급) 또는 3%(1급)	자격증 사본	
서울주택도시공사 2021년 청년 체험형 인턴 경력자 (4개월 이상 근무자)		서류전형 면제 (입사지원 시 공인 영어성적 불필요), 필기시험 만점의 5%	경력증명서 또는 표창장	
서울주택도시공사 주거복지직 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자		필기시험 만점의 5%	경력증명서	

* 모든 자격은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이전 취득분에 한함.

* 취업지원대상자는 채용직무별로 선발예정인원이 3인 이하인 경우는 가점 없이 본인이 취득한 점수로 각 전형을 통과한 경우에만 합격 결정이 가능하며, 합격점수 및 순위 결정 시에는 가점한 점수로 함.

○ 채용우대 지원자격 상세내용

구 분	지 원 자 격
장애인 (제한경쟁)	◇ 『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』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로서 채용예정 직무의 수행이 가능한 자

취업지원 대상자 (가점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◇ 『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』 제29조 ◇ 『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』 제16조 ◇ 『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』 제32조 ◇ 『5·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』 제20조 ◇ 『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』 제19조 ◇ 『고엽제후유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』 제7조의9 <div style="text-align: right; margin-top: 10px;"> }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</div>
다문화가족 (가점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◇ 『다문화가족지원법』 제2조 제1호 나목에 해당하는 자 및 그 가족 - 국적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같은 법 제2조 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→ 외국인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그 자녀만 지원 가능 - 국적 취득자의 경우 한국어 소통이 원활한 자(한국어능력시험(TOPIK) 5급 이상)
북한이탈주민 (가점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◇ 『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』 제2조 제1호에 따른 자 - “북한이탈주민”이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(이하 “북한”이라 한다)에 주소, 직계 가족, 배우자,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
고급자격증 소지자 (가점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◇ 『변호사법』 제4조에 의한 <u>변호사</u> 자격을 취득한 자 ◇ 『공인회계사법』 제3조에 의한 <u>공인회계사</u> 자격을 취득한 자 ◇ 『세무사법』 제3조에 의한 <u>세무사</u> 자격을 취득한 자 ◇ 『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』 제11조에 의한 <u>감정평가사</u> 자격을 취득한 자 ◇ 『법무사법』 제4조에 의한 <u>법무사</u> 자격을 취득한 자 ◇ 『공인노무사법』 제3조에 의한 <u>공인노무사</u> 자격을 취득한 자 ◇ 『기술사법』 제2조의 <u>기술사</u> 자격을 취득한 자 ◇ 『건축사법』 제7조에 의한 <u>건축사</u> 자격을 취득한 자
서울주택도시공사 2021년 청년 체험형 인턴 경력자 (가점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◇ 2021년도에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청년 체험형 인턴으로 4개월 이상 근무하고 근무성적평가결과 정규직 채용 우대 대상으로 결정된 자. 단, 지원분야의 필수 자격을 갖춘 자에 한함.
서울주택도시공사 주거복지직으로 3년 이상 근속한 자 (가점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◇ 서울주택도시공사 주거복지직으로 3년 이상 근속한 자. 단, 지원분야의 필수 자격을 갖춘 자에 한함.